

영등포구의회
제20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8. 4. 16.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60호로 2018년 4월 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상위법 및 타법 제·개정에 의해 일치하지 않는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및 관련 조문과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여 실효성
있는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규정 정비(안 제2조)

- 공공건축물과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 삭제
-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및 도시디자인 사업 정의 신설

나. 야간경관계획을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및 도시디자인 사업

시행의 규정에서 삭제함(안 제3조~제4조)

다. 도시디자인 위원회 심의대상 조정(안 제8조)

-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을 총사업비 5억원 이하의 사업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
- 공공건축물 및 야간경관 시설 심의대상에서 삭제
-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사항 신설 및 별표 심의대상 개정

라. 소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안 제10조)

마. 도시디자인 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경관법」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디자인 관련법 제·개정에 따라 상위법 조문과 일치하지 않은 내용 정비 및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관련 조문과 위원회 구성 등을 정비하여 실효성 있는 도시디자인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우리 구 도시 공간 및 도시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안 제2조는 도시디자인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고(안 제2조제1항, 제4항, 제5항)
 - 안 제3조제2항제4호 및 안 제4조제1항제3호의 야간경관 사업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와 관련된 내용으로써 삭제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위원회 심의대상을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관련 규정 내용을 반영, 총사업비 5억에서 총사업비 10억 미만 사업으로 변경하고(제2항제1호), 도시공공 건축물 및 야간경관사업을 심의대상에서 삭제하였으며(제2항제3

호, 제5호), 사회기반시설의 경관 심의사항의 신설과 별표 심의 대상을 개정하였고(제2항제9호 및 안 별표)

- 안 제10조에서는 소위원회 심의 자문 사항에서는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공공건축물 및 경관 사업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및 소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규정 하였으며
-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함.

○ 본 개정 조례안은 「경관법」 과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 및 2016. 2. 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 관련 내용을 반영, 관련 조문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또한 도시디자인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심의대상 등을 정비한 개정 안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 련 법 령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공간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그 밖에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배치·형태·윤곽·색채 등을 디자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란 시 전체 도시디자인의 개선·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도시디자인사업"이란 도시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제작·설치·관리 등의 사업을 말한다.
4. "도시디자인사업자"란 시장으로부터 사업제안서의 승인을 얻어 도시디자인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도시디자인가이드라인"이란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본방향, 원칙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6. "도시디자인심의"란 디자인과 관련한 정책·조례 등과 시설물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디자인의 권역별·지역별 및 가로별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시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4.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5. 우수한 도시디자인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디자인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도시디자인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사항(단, 야간경관 시설은 제외)
5. 별표의 시설물(단,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10억원 미만인 사업은 제외)
6. 제4호 및 제5호의 심의대상 중 우수공공디자인 인증 제품 및 표준형디자인은 제외
7.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
8.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경관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3.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4.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5.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6.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7.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8.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5조(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과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30.>

1. 경관지구의 건축물로서 높이 3층 또는 12미터 초과, 건폐율 30퍼센트를 초과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협의)대상 건축물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영 제22조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7.1.5.>

1.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건축물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기능 및 절차 등)를 준용하여 시 또는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2. 제1항 제3호의 건축물은 5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25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② 영 제22조제2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5.7.30., 2016.3.24., 2017.1.5.>

1.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가. 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법 제3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나.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발사업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2. 도시디자인위원회 :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3. 도시계획위원회 :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발사업

4. 도시재정비위원회 :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발사업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5. 건축위원회 : 법 제30조제1항제7호

6. 도시공원위원회 : 법 제30조제1항제7호 중 도시공원내 건축물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제5조(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4.>

② 제1항에 따른 빛공해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도시조명의 에너지절감 및 이산화탄소 저감에 관한 사항

3. 야간경관계획 및 야간경관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제22조(조명계획의 수립 등) ①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조명기구를 신설, 개량, 증설하려는 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기 전에 법 제15조의 조명기구의 설치·관리기준과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빛방사허용기준 및 제21조의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조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4.>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조명계획 중 별표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1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구 도시디자인위원회”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위원회(이하 “구 건축위원회”라 한다)에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따른다. 이 경우 구 도시디자인위원회 및 구 건축위원회에 범죄예방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